



의안번호

제11호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2. 2. 7.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제11호
----------	------

제출연월일 : 2022. 2. 7.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과장

1. 제안이유

-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시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현황】

- 설립 일 - 1998. 12. 28.
- 일반현황 - 임원현황 : 이사 12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 5,527,386천원
- 설립목적 - 인재육성을 위한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 면학시설 확충에 필요한 관내 초·중·고·대학교 지원사업

□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금 : 290,000천원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

□ 출연계획(최근 5년 출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연금 (협력사업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290,000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재정법」
-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출연금) 논산시는 장학회의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본 산 시

제18조(금고 검사) “갑”은 금고 검사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을”이 보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관련서류 보관) “을”은 금고업무 취급시 발생한 각종 서류는 공문서 보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보관(10년 이상)하여야 한다.

제20조(약정내용의 변경) 이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전이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출연 등) ① “을”은 “갑”에게 제안한 협력사업비로 출연하기로 한 금액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각서를 공증한 후 “갑”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매년 3. 31.까지(4년간) 논산시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서』 제23조(손해배상) 규정에 따른다.

③ “을”은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갑”에게 제출한 각종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지연으로 “갑”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 조문 해석) 이 약정의 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33호서식]

공증인가법무법인청남로

전화(042) 472-5050

FAX(042) 484-6429

등부 2021 년 제11653호

인 증 서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 시에 대한 대출금리

(단위 : %)

구 분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적용금리(A+B)
1년 일시차입금	0.92	0.80	1.72

- 기준금리는 3개월MOR 기준금리 적용('21.09.08. 기준)
- 1년 초과 대출의 경우 기간 1년 대출 기표 후 1년 씩 연장 운용 가능
- 대출차입관련 수수료 등의 비용과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2. 협력사업비 출연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협력사업비
계	660
2022년	165
2023년	165
2024년	165
2025년	165

- 출연금은 매년 3월말까지 고지서에 따라 세입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 해당일수 만큼 산출한 지체변상금 납부

3. 기타사항(각종 제안사업의 이행 등)

-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각종 제안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이행으로 논산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2021년 11월 1일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
지부장 최 생 영 (인)



논산시장 귀하

[제33호서식]

전화(042) 472-5050

공증인가법무법인청남로 FAX(042) 484-6429

등부 2021 년 제 11620 호

인 증 서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협력사업비 출연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협력사업비
계	500
2022년	125
2023년	125
2024년	125
2025년	125

- 출연금액은 매년 3.31일까지 고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을 적용 해당일수 만큼 산출한 지체변상금 납부



2021년 10월 29일

(주)하나은행 논산지점장 임 영 진 

논산시장 귀하